

2022년 통합환경-폐기물관리 역량강화교육

2022년 10월 ~ 11월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2022년 환경기술전문교육

『통합환경-폐기물관리 역량강화교육』

2022. 10. ~ 11.

2022년 환경기술전문교육
『통합환경-폐기물관리 역량강화교육』

2022. 10. ~ 11.





2022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통합환경-폐기물 역량강화교육

**교육 일정**

- 모집기간: 2022년 9월 1일(목) ~ 11월 27일(월)
- 교육기간: 2022년 10월 1일(목) ~ 11월 30일(수)

교육 대상

- 광주광역시 지역 소재 기업체 환경관리자 및 환경기술인
- 환경관련 학과대학(원)생 및 졸업생 등

참가비

무료

교육문의

환경교육팀 TEL 062-530-3992

교육방식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온라인 강의(사전 제작된 강의 동영상 송출 방식)

접수처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gec.or.kr) - 온라인 환경교육센터(<http://edu.gjgec.or.kr>)

주관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한국환경공단

주최

환경부, 광주광역시

협력

광주전남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환경기술인협회

온라인교육 플랫폼 <http://edu.gjgec.or.kr>

접수 및 수강방법(접수 후 바로수강 가능):**첫번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온라인 교육 플랫폼 접속

두번째

강의리스트 → 수강희망 교육 선택 → 강의신청하기 → 확인

세번째

홈페이지 메인 → 수강생 인증 바로가기(교육선택, 휴대전화번호, 성명) → 확인

네번째

로그인(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임시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뒤 4자리)

주의1) 해당교육 강좌 동영상(강의시간 종료(0:00:00)일 때 수강완료 체크됨)

주의2) 수강동영상의 중간 종료 시, 수강 이력이 초기화됨

폐기물 환경관리**1강. 통합환경관리법령이해**

삼양엔지니어링 송종 대표

2강. 폐기물관리법 개정

삼양엔지니어링 송종 대표

3강. 사업장 폐기물관리요령

(사업장 지도점검 방향)

광주광역시남산구 암경호 주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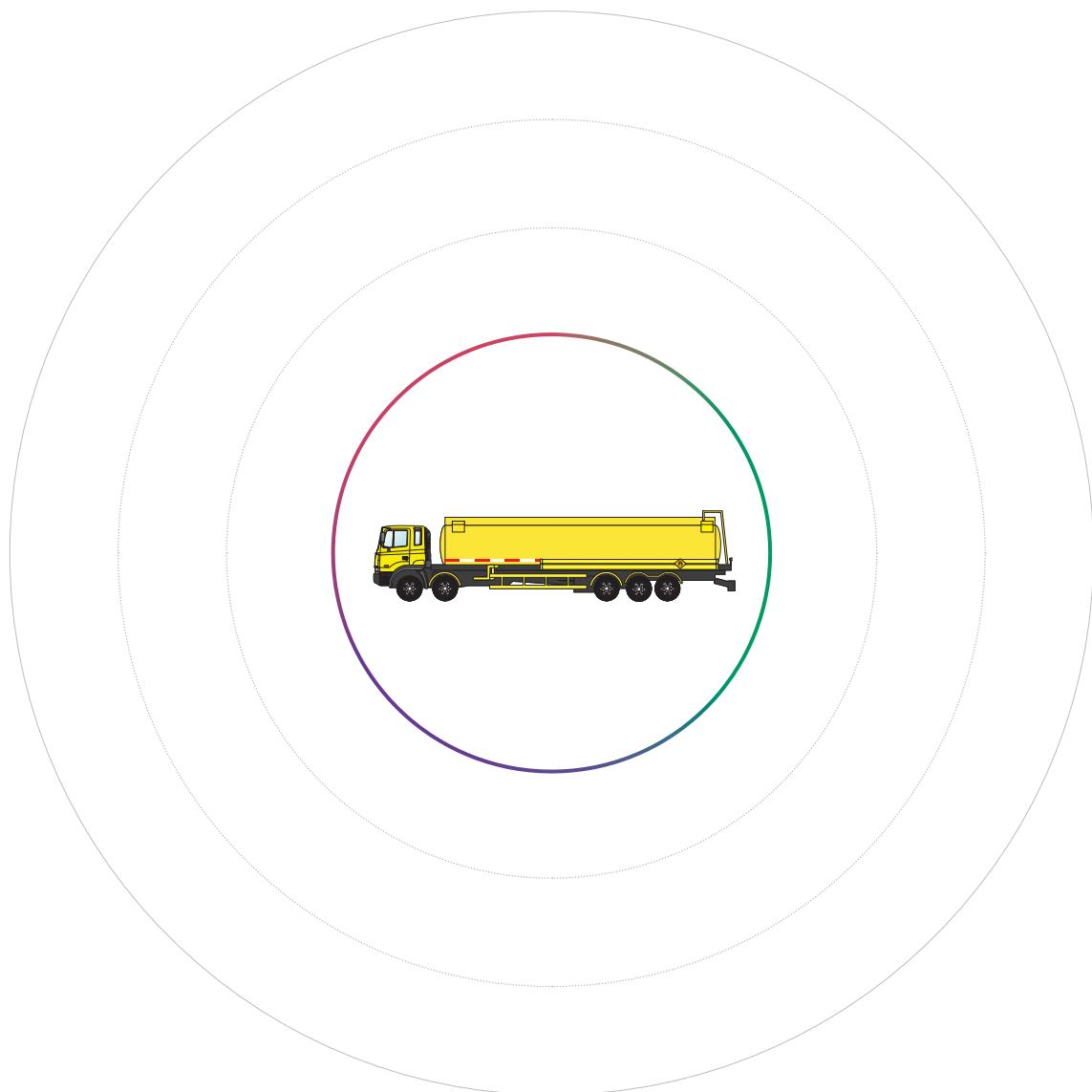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WWW.GJGE.C.OR.KR 

Contents

1강. 통합환경관리법령이해	2
2강. 폐기물관리법 개정	28
3강. 사업장폐기물 관리요령	44
(사업장 지도점검 방향)	

통합환경관리 법령이해



삼양엔지니어링 송종 대표

[2022년 통합환경안전관리자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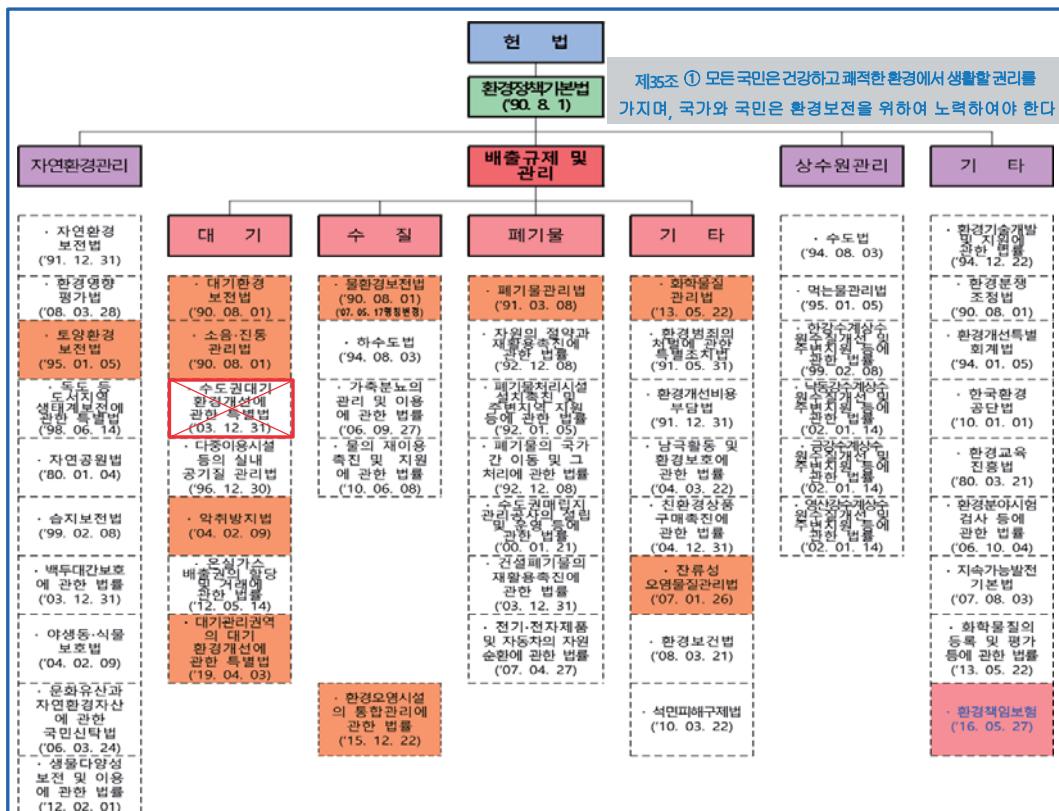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2022. 10. ~ 2022. 11. .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송종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환경관련법 허가(신고) 종류

관련 법률	허가·신고 종류	허가·신고 기관	비 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 등 설치·운영허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환경부	사전허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사업장 설치허가	지자체(환경부)	사전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지자체	사전허가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유역환경청	사전신고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지자체	사전신고
대기환경보전법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지자체	사전신고
악취방지법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	지자체	사전신고
물환경보전법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지자체	사전허가
물환경보전법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유역환경청	폐수허가 후 30일 이내 사전신고 변경 : 60일 이내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지자체	변경 : 60일 이내
화학물질관리법	화학사고예방 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취급시설검사 개시 60일 전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유역환경청	사전허가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허가 (사업계획서)	지자체(일반) 유역환경청(지정)	사전 : 사업 계획서 설치후 : 허가
토양환경보전법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신고	지자체	사전신고 변경 : 사유 발생 30일이내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관리대상기기등 신고 2008. 1. 27일 이후 PCB 0.05mg/t 이하 제외	지자체	설치 후 30일 이내

SY samyangengineering³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 방식의 변화

공해방지법 제정 1963.11 ◦ 경제개발 5개년 계획('62~) 이후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대응

◦ '69년 시행령 제정 (오염물질 : 공해, 허가성격: "신고")

공해방지법 개정 1971.01 ◦ 60년대 후반, 환경오염문제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

◦ 배출시설 개념 도입, 허가제 실시

◦ 대기, 수질, 소음, 악취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환경보전법 제정 1977.12 ◦ 60~70년대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개발 본격화

◦ 특정유해물질 지정, 환경기준 설정, 배출부과금 도입

◦ 매체 구분 없이 55개 오염물질 지정

복수법 체계 정착 1990.08 ◦ 환경문제 다양화에 따라 오염분야별 대책법 제정 필요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으로 분법

◦ 매체별 관리체계 정착 : 오염물질별로 허가 또는 신고

SY samyangengineering⁴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관리의 문제점

매체별 분산관리

- 인허가 복잡, 관리 비효율 (서류허가기관 중복 분산)
- 오염물질간 상호영향 미 고려

획일적 배출기준

- 업종 특성 미고려, 불평등 유발
- 오염 누적시 환경용량 초과

기술검토 부재

- 형식적 검토, 불완전한 허가
- 단속·적발 위주의 사후관리

허가조건 영구유지

- 사업장 여건 변화 미 반영
- 환경기술 정체 (우수 신기술 적용 불필요)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로 전환

“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대기, 물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경제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오염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관리체계 ”

허가통합

매체별 환경관리 방식 통합,
매체간 오염 떠돌이 현상 차단

수용체 중심 관리

배출영향분석, 맞춤형 배출기준 설정
주변의 사람·동식물 등의 환경안전 담보

과학적 관리

최적가용기법(BAT) 활용,
주기적인 허가조건 재검토

환경관리 선진화

정밀진단, 기술지원 중심
통계기반 등 자율관리체계

허가는 꼼꼼히

수용체 중심, 과학기반 관리

절차는 간소화

허가 통합, 자율적 관리체계 전환

환경의 질 보장

기업부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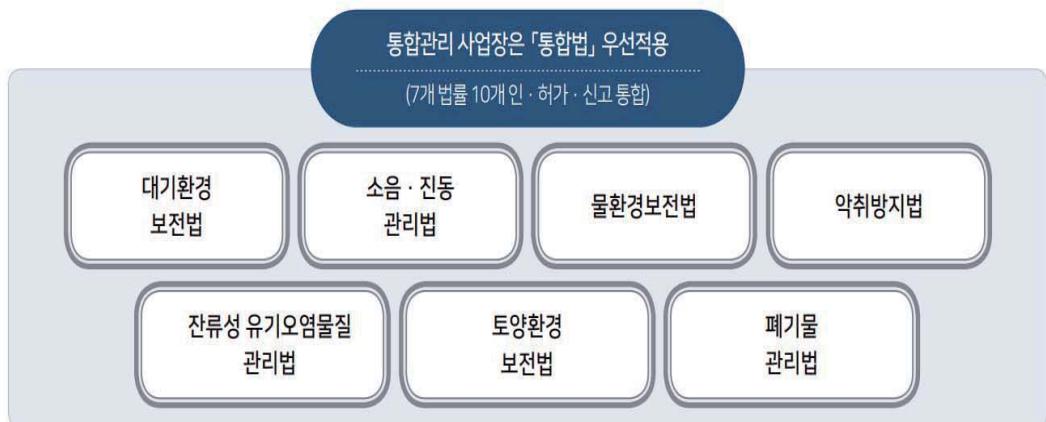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사업장 환경관리 체계 구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15.12.22)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7개 법률 10개 허가(신고)통합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 대상 환경영향이 큰 업종 대기 또는 수질 1·2종 사업장

- * 전체사업장의 1.3%
- * 오염물질 부하량 : 대기 91%, 수질 75%

(중·소규모 사업장은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가능)

- 대기오염물질 : 20톤/년 이상 발생 사업장(2종 이상)
- 폐수 : 700m³/일 이상 배출 사업장(2종 이상)

● 적용시기 '17년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

(기존 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통합관리 대상 업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1. 전기업(35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화력 발전업(35113) 나. 기타 발전업(35119) 2.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3. 폐기물 처리업(38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매립시설만 단독으로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나.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2017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4.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5.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합성고무 제조업(20201) 나.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202) 6. 1차 철강 제조업(241) 7.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2018년 1월 1일	2021년 12월 31일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통합관리 대상 업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8. 석유 정제품 제조업(192) 9.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기타 기초 무기 화학물질 제조업(20129) 나.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20131) 10.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20119) 나. 염료,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20132) 11.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1) 나.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12) 다. 계면활성제 제조업(20421) 라.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22) 마. 화장품 제조업(20423) 바.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사.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아.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자. 바이오 연료 및 혼합물 제조업(20495) 차.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12. 비료, 농약 및 살균, 살충제 제조업(203)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비료 및 질소 화합물 제조업(2031) 나. 살균 · 살충제 및 농약 제조업(2032)	2019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통합관리 대상 업종	신규 사업장	기존 사업장
13.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펄프 제조업(1711) 나. 신문용지 제조업(17121) 다.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라.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마. 위생용 원지 제조업(17125) 바.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14.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9)	2020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15.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다음 각 목의 업종 가. 표시장치 제조업(2621) 나. 인쇄회로기판용 적층판 제조업(26221) 다. 경성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2) 라. 연성 및 기타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3) 마.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1) 바. 전자감지장치 제조업(26295) 사.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16.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17.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18.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19.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20. 반도체 제조업(261) 2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2021년 1월 1일	2024년 12월 31일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관리 대상 업종 및 적용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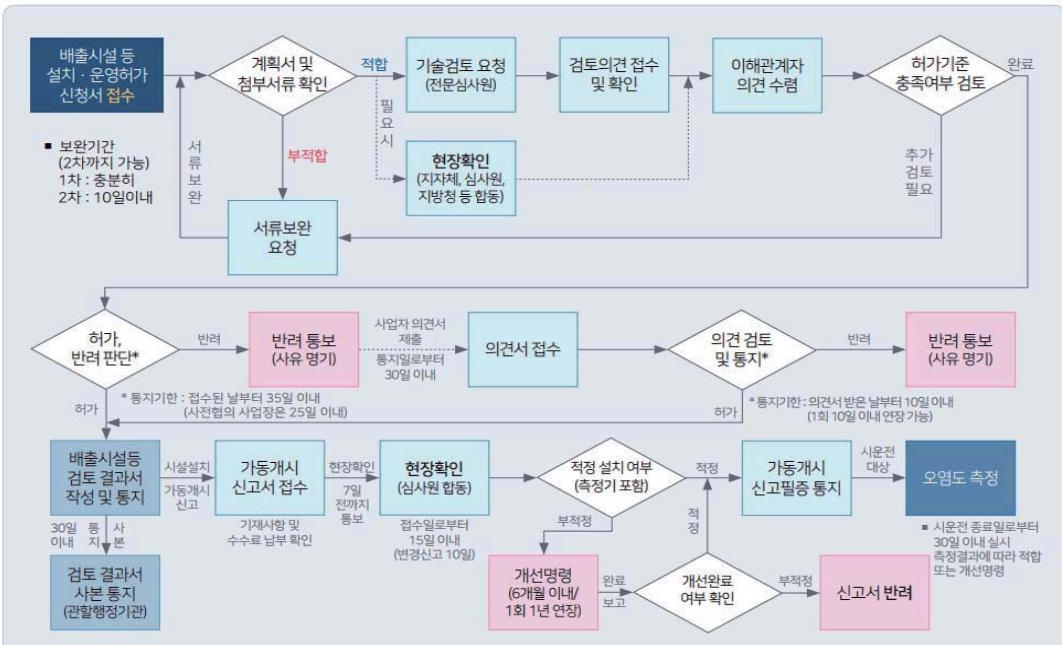
비고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업종 구분**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팔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위 표의 **제3호**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두 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해당 사업장의 업종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업종의 적용 시기 중 가장 **늦은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 위 표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또는 증기**를 공급하거나 그 사업장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한 **배출시설등**을 설치한 사업장으로서,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의 대부분을 산업단지에 있는 사업장들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그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장들의 업종 및 적용 시기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장의 적용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업종의 적용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통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신청 시기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적용 시기로 한다.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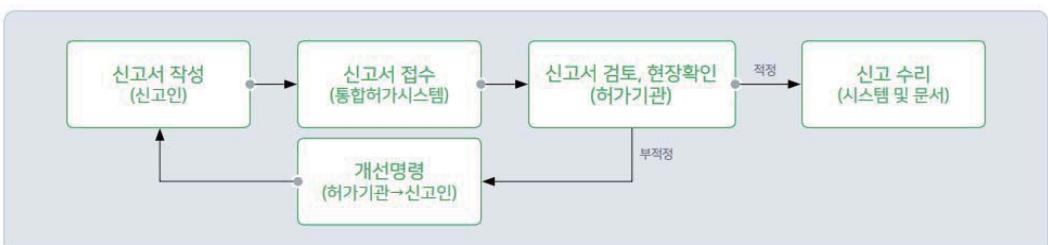
통합허가 절차



SY 삼양엔지니어링¹³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가동개시 신고



- 최초허가 및 변경허가

- 변경신고

-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규모(굴뚝별) 20% 이상 증설
- ② 소음·진동배출시설 규모 50% 이상 증설
- ③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추가설치 또는 중요사항 변경
- ④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 ⑤ 방지시설 면제 시설에 방지시설 신규 설치

SY 삼양엔지니어링¹⁴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운전 및 오염도 측정



- 시운전 기간 중에는 허가배출기준 관련 행정처분, 부과금, 벌칙 등 미 적용
- 시운전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오염도 검사 실시
- * 허가배출기준 준수 여부, 허가되지 않은 오염물질 등의 배출여부 확인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사전협의(법 제5조)

1.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2.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 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계획
 - 나. 배출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 ※ 별지 1호 서식 : 사전협의 신청서

◆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기간

-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년을 말한다.
- 부득이한 경우 :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 할 수 있다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시설등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 : 변경된 사항만)

1.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2. 배출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분석한 배출영향분석 결과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5.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내용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이 그 결과를 반영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장 일반현황
 - 배출구별 허가배출 기준안
 -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 개별법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서류

SY 17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시설 변경신고 : 변경된 사항만)

1.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계획
3.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계획
4.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업장 일반현황
 - 배출구별 허가배출 기준안
 - 연료 및 원료 등 사용물질
 - 최적가용기법 적용 내역
 - 개별법 허가, 변경허가, 변경신고 등 서류

- ◆ 허가 처리기한 : 35일,
- ◆ 변경허가 : 사전협의를 거친 경우, 새로운 오염물질 추가, 배출시설 신설 또는 추가로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 변경 : 25일

- 허가에 따른 의견 제출 : 30일 이내
-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토결과 통지
-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SY 18
SAM YANG ENGINEERING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1. 오염물질 등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 변경

허가(신고)종류	범위	내용	변경허가	변경신고	제출시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1,000톤 미만 사업장	30% 이상 증가량이 20톤 미만 제외	○		변경 전	제한지역 1/2 이상 증가
	1,000~6,000톤 미만 사업장	20% + 100톤 이상	○		변경 전	
	6,000~13,000 미만 사업장	10% + 700톤 이상	○		변경 전	
	13,000 이상 사업장	2,000톤 이상	○		변경 전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량 증가	30% 이상 또는 700m ³ 이상	○		변경 전	제한지역 15% 이상 또는 200m ³ 이상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2.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 대상 오염물질 농도기준 초과 시만 해당)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시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등의 신설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다른 배출시설 신설	○		변경 전	신설, 증설, 교체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등의 증설	설치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같은 배출시설 추가설치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같은 배출시설 추가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배출시설 등의 교체 또는 변경	같은 배출시설의 교체 또는 변경	○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같은 배출시설 교체, 변경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3. 배출시설 등의 신설 또는 추가설치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또는 허가조건의 변경 시)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시 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를 신설 또는 추가설치	배출구의 신설 또는 추가 설치	○		변경 전	배출구 신설, 추가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의 신설 또는 제한지역에서 배 출시설 추가 설치	배출시설 신설 또는 제한지역에 추가설치	○		변경 전	배출시설 신설 또는 제한지역 추가설치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가. 대기오염물질

물질명	농도기준	물질명	농도기준
염소 및 염화수소	0.4ppm	클로로포름	0.1ppm
불소화물	0.05ppm	포름알데히드	0.08ppm
시안화수소	0.05ppm	아세트알데히드	0.01ppm
염화비닐	0.1ppm	1,3-부타디엔	0.03ppm
페놀 및 그 화합물	0.2ppm	에틸렌옥사이드	0.05ppm
벤젠	0.1ppm	디클로로메탄	0.5ppm
사염화탄소	0.1ppm	트리클로로에틸렌	0.3ppm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가. 대기오염물질

물질명	농도기준	물질명	농도기준
히드라진	0.45ppm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05mg/m ³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mg/m ³	플리염화비페닐	1pg/m ³
납 및 그 화합물	0.05mg/m ³	다이옥신	0.001ng-TEQ (독성등가치)/m ³
크롬 및 그 화합물	0.1mg/m ³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류	10ng/m ³
비소 및 그 화합물	0.003ppm	이황화메틸	0.1ppb
수은 및 그 화합물	0.0005mg/m ³	총 휘발성유기화합물 (아닐린, 스틸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2-디클로로에탄, 에틸벤젠, 아크릴로니트릴)	0.4mg/m ³
니켈 및 그 화합물	0.01mg/m ³	그 밖의 특정대기유해물질	0.00

◆ 특정대기유해물질 외의 대기오염물질 : 정량한계값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나. 수질오염물질

물질명	농도기준	물질명	농도기준
구리와 그 화합물	0.1mg/l	카드뮴과 그 화합물	0.005mg/l
납과 그 화합물	0.01mg/l	테트라클로로에틸렌	0.01mg/l
비소와 그 화합물	0.01mg/l	트리클로로에틸렌	0.03mg/l
수은과 그 화합물	0.001mg/l	플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0.0005mg/l
시안화합물	0.01mg/l	셀레늄과 그 화합물	0.01mg/l
유기인 화합물	0.0005mg/l	벤젠	0.01mg/l
6가크롬 화합물	0.05mg/l	사염화탄소	0.002mg/l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허가 대상

변경허가 대상 신규 오염물질등의 농도기준(제5조제1항 관련)

나. 수질오염물질

물질명	농도기준	물질명	농도기준
디클로로메탄	0.02mg/l	아크릴로니트릴	0.005
1,1-디클로로에틸렌	0.03mg/l	브로모포름	0.03
1,2-디클로로에탄	0.03mg/l	페놀	0.1
클로로포름	0.08mg/l	펜타클로로페놀	0.001
1,4-다이옥산	0.05mg/l	그 밖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정량한계값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008mg/l		
염화비닐	0.005mg/l		

◆ 특정수질유해물질 외의 수질오염물질 : 정량한계값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 등의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같은 배출구에 같은 종류의 배출시설을 증설, 교체 또는 폐쇄(면제 포함)	같은 배출구에 같은 배출시설 증설, 교체 폐쇄		○	사전 변경신고	10%미만으로 방지시설 처리능력 이내는 제외
취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 당시보다 50% 이상 배출시설의 증가	배출시설 증가		○	사전 변경신고	
	배출시설의 폐쇄	배출시설 폐쇄		○	사전 변경신고	
	특별대책지역/대기관리권역/ 배출규제 추가지정 지역에서 배출시설 신설	배출시설 신설		○	사전 변경신고	
	지역지정 고시 당시 그 지역에서 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지정 고시 당시 배출시설 운영자		○	사전 변경신고	
	취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추가된 취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을 운영자	취발성 유기화합물 추가 고시된 경우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 등의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비산배출시설	동일한 시설, 관리기준이 적용되는 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 규모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수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 이상 변경되는 경우	배출시설 10% 이상 증설, 교체 또는 폐쇄		○	사전 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배출시설 신설		○	사전 변경신고	
비산먼지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모를 늘리거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	규모의 증가 또는 종류 추가		○	사전 변경신고	
	비산먼지 배출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 공정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을 신규로 실시하는 경우	발생사업의 신설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 등의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악취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폐쇄 또는 악취배출공정의 추가 또는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 폐쇄 배출공정 추가 또는 폐쇄		○	사전 변경신고	
	악취 관리지역에서 악취배출 시설의 신설 또는 허가배출 기준이 설정된 것 외의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악취배출 시설의 추가 설치하는 경우	배출시설 신설 새로운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을 추가 설치		○	사전 변경신고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당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자 또는 추가 지정 당시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당시 배출시설 운영자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 등의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추가설치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 추가 또는 일부 폐쇄		○	사전 변경신고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 배출량 증가/감소로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사전 변경신고	
비점오염원 배출시설	비점오염원 유발 사업장 총 부지 면적이 허가/변경허가 신고 당시보다 15% 이상 증가되는 경우	총 부지면적이 15% 이상 증가		○	사전 변경신고	
	비점오염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배출시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	사전 변경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또는 사업의 재개 및 사업장의 증설 등에 해당되는 경우	신고대상 사업의 실시, 시설의 설치, 사업의 재개, 사업장의 증설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1. 배출시설 등의 신설,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을 허가/변경허가/신고 한 당시보다 50% 이상 증설하는 경우	배출시설 50% 이상 증설		○	사전 변경신고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전부 폐쇄하는 경우	전부 폐쇄		○	사전 변경신고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신설		○	사전 변경신고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설	배출시설의 신설		○	사전 변경신고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또는 추가설치 (학교, 연구기관에서 시험·연구목적 처리시설은 제외)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시설의 신설 처리시설의 추가 설치 (중요사항 변경)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 폐기물관리법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이란

- ③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7., 2012. 9. 24., 2016. 4. 28.>>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 · (2), 나)의 (1) · (2), 다)의 (2) · (3), 라)의 (1) · (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 · 14) 또는 사목11) ·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라. 별표 9 제2호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2.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증설, 교체하거나 폐쇄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증설 방지시설의 교체 또는 폐쇄		○	사전 변경신고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또는 유예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의무면제시설에 새로 방지시설 설치		○	사전 변경신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억제시설 변경 방지 시설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의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운영 계획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비산먼지 배출시설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또는 조치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발생억제시설 변경 조치사항 변경		○	사전 변경신고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시설 변경 (원료 변경포함) 또는 일부분지시설의운영계획변경	악취방지시설 변경 악취방지시설 운영 계획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또는 유예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의무면제시설에 새로 방지 시설 설치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2. 방지시설을 증설, 교체, 폐쇄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 폐쇄 또는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 변경	방지시설의 일부 폐쇄 폐수처리방법 변경 처리공정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 또는 유예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의무면제시설에 새로 방지시설 설치		○	사전 변경신고	
비점오염원 배출시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 위치, 용량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저감시설의종류변경 저감시설의위치변경 저감시설의용량변경 전부 또는 일부 폐쇄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3. 배출시설 등에 사용하는 원료연료 등을 변경하거나 배출시설 운영조건 변경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대기배출시설	대기배출시설의 원료, 연료 변경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배출량이 증가되지 않는 원료 변경, 종전의 연료 보다 황 함량이 낮은 연료 변경은 제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원료, 연료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조건 변경		○	사전 변경신고	
	일일 조업시간 변경	조업시간 변경		○	사전 변경신고	
비산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비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 변경		○	사전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악취배출시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 방지시설 운영조건 변경		○	사전 변경신고	
	일일 조업시간 변경	조업시간 변경		○	사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4. 기타 사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폐수배출시설	폐수를 전량 위탁하는 경우 위탁 받는 자를 변경	위탁 받는 자 변경		○	사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을 허가/변경허가/신고 한 당시보다 30% 이상 증설하는 경우	30% 이상 증설		○	사후 변경신고 (30일 이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을 교체하거나 토양오염방지 시설, 저장물질을 변경하는 경우	대상시설의 교체 방지시설의 변경 저장물질 변경		○	사후 변경신고 (30일 이내)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허가(법 제6조) 변경신고 대상

4. 기타 사후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허가(신고) 종류	범위	내용	변경 허가	변경 신고	제출 시기	비고
공통 적용	사업장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상호 변경 대표자 변경		○	사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배출시설 등이나 방지시설 등을 임대하는 경우	배출시설 임대 방지시설 임대		○	사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하나 이상의 배출시설 등을 전부 폐쇄하거나 사용을 종료 하는 경우	배출시설 폐쇄 배출시설 사용 종료		○	사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사전 변경신고 사항이 반복적으로 변경되어 허가조건에 반복적인 변경사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명시한 경우	반복적 사전 변경 신고에 따른 준수사항을 명시한 경우		○	사후 변경신고 (3개월 이내)	
	허가 또는 변경허가 당시 예측하지 못한 오염물질이 농도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배출구에서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것을 허가조건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농도기준 초과 물질이 배출되어 주기적 측정 허가조건 설정이 필요한 경우		○	사후 변경신고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농도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기준 초과 새로운 오염물질 검출 시		○	사후 변경신고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인 선임(법 제21조의2)

사업장 종류		적용시기	대기분야	수질분야	자격취득 교육	보수교육	비고
1종	대기업	24'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중소기업	25'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종	대기업	24'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중소기업	25'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3종	대기업	24'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중소기업	25' 1. 1.	명	명	교육 이수 후 자격증 발급	2년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환경부장관 승인 받아 기간 연장) 여행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직무 대행자 선임.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 허가신청을 위해 신청서(규칙 별지 제1호서식)와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

목차	주요내용 및 작성목적
1장. 일반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허가대상의 범위 및 입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사업장 조성단계에서의 환경관리 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내용) 사업장 일반 정보 및 사업 목적, 사업장 조성계획, 입지현황, 개별법상 규제사항, 인근 환경적 배려 필요시설 정보 등
2, 3장. 배출영향분석결과·허가 배출기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사업자가 수행·제출한 배출영향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적정 허가기준 부여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허가시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배출영향분석(법 제8조) 결과 및 관련사항(지역 환경정보, 배출구(굴뚝·방류구) 정보, 사업장 설치에 따른 추가 오염도 정보) 등
4장 배출시설 등 및 방지 시설현황, 설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오염물질 배출정보와 적정 관리계획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내용) 통합공정도, 배출·방지시설 정보, 오염물질 배출량 등 ※ 유틸리티공정, 제조공정, 오염물질처리공정으로 구분하여 작성
5장 연료, 원료 등 사용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물질흐름을 추적으로 배출물질 예측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함. (주요내용) 원료, 연료 등의 투입물 및 배출물의 양, 물질수지표 등
6장 사후환경관리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사업장의 시설유지 및 환경안전 관리체계를 파악하기 위함. (주요내용) 운영관리 체계, 유지보수·점검계획, 오염물질 모니터링 계획, 운전조건 변경 시 환경관리 계획, 환경사고 예방 계획 등
7장 최적가용기법 적용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최적가용기법이 적용되는 시설 및 관리기술 파악 (주요내용) 사업장에서 적용 예정인 최적가용기법 등
8장 제출·첨부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성목적)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제출사항의 적절성 검토 (주요내용) 배출량 주정근거, 배출·방지시설 설계근거 및 사양서, 원료 별 성분 분석자료, 기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출서류 등

- 자발적 통합허가 신청 시 배출영향분석결과(신규, 기존),
- 사업장 일반현황(기존 허가 받은 사항에서 변동이 없는 경우)은 제출 면제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영향분석

- 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주변환경(대기, 수질)에 미치는 영향(추가오염도, 총오염도)을 조사 분석
 - 분석방법 : 대상지역의 설정, 기존 오염도의 산정, 추가오염도와 총 오염도의 산정 등

- 사전협의 신청 시 또는 통합허가(변경허가) 신청 시 평가결과 첨부

- 배출영향분석이 생략 가능한 경우
 - * 수도권총량관리 사업장으로서 완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대기오염물질, 공공·하·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염물질 중 적정 처리물질(BOD, COD 등), 재이용·위탁·해양배출 폐수
 - 배출영향분석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 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환경성조사서(폐기물관리법)

※ 주요 용어

기존 오염도

지역대기에 확산되어 있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오염물질의 현황농도 (BC, Background Concentration)

추가 오염도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지역대기에서 확산되거나 수용하천에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의 농도 증가량 (PC, Process Contribution, 오염기여도)

총 오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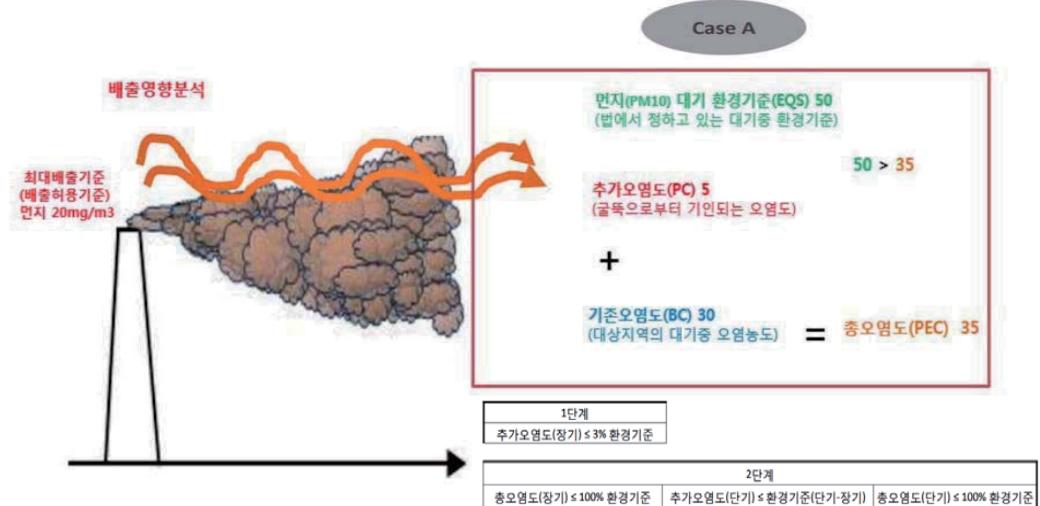
오염물질 등이 배출된 이후 배출시설 주변의 지역대기 또는 수용하천에서 예측되는 농도 (PEC, Predic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 예측환경농도)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영향분석



* (대기오염물질 배출영향분석 만족 조건) 1단계 또는 2단계를 만족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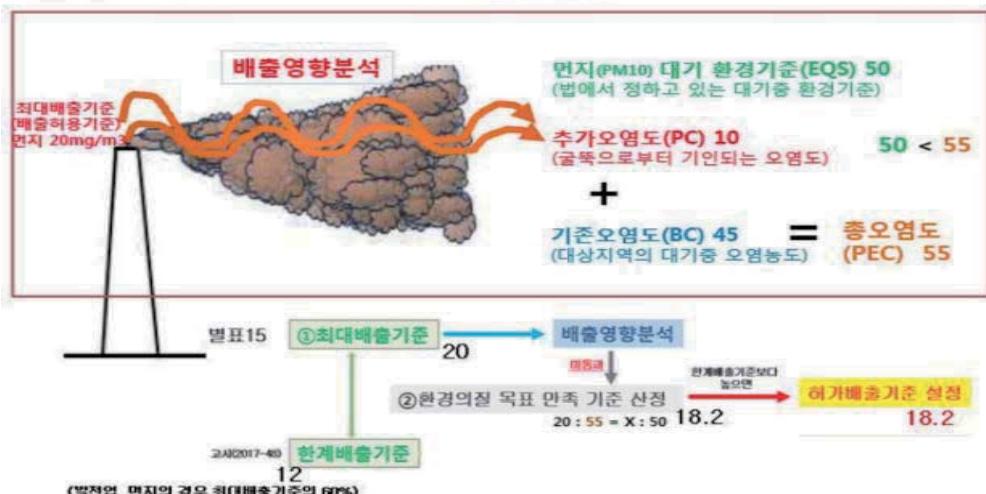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영향분석

Cas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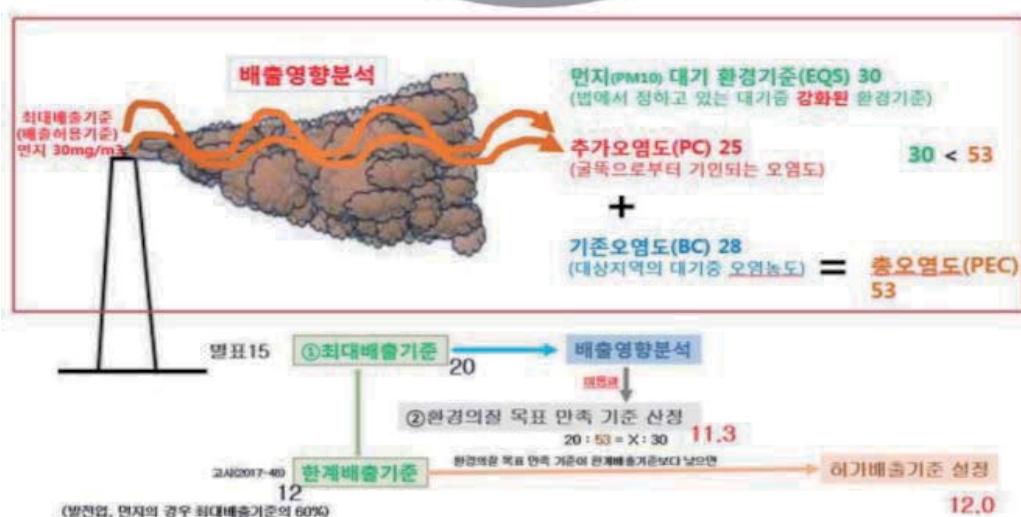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배출영향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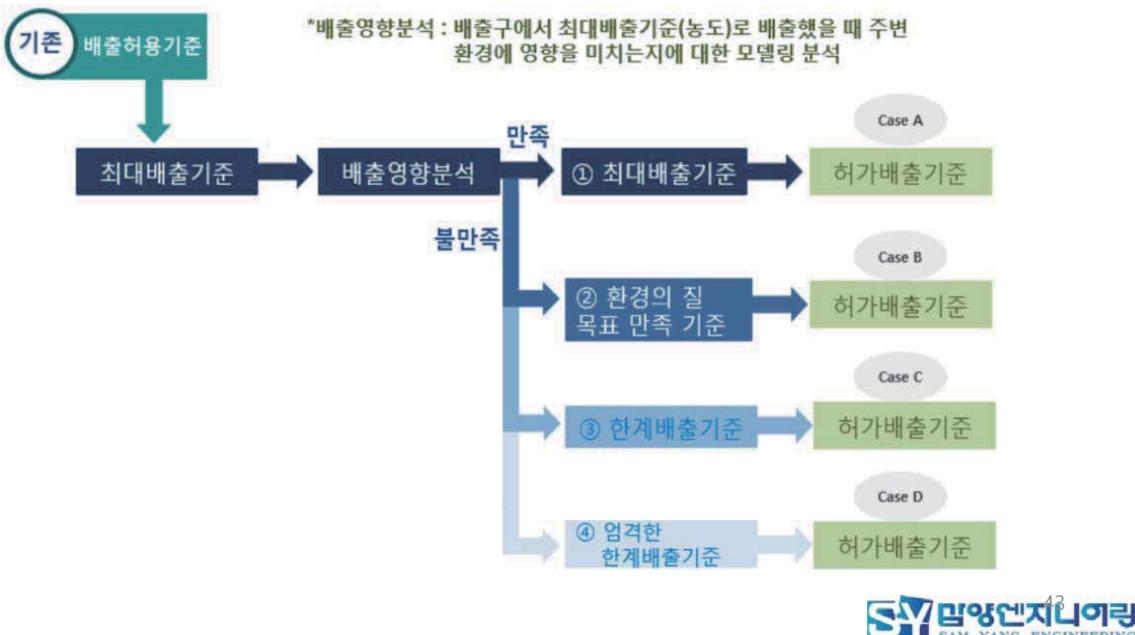
Case C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 대기오염물질 :

- 가. 배출시설이 연결된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 나. 배출구별 허가배출기준(안)이 시행규칙 별표 15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그 기준을 허가배출
기준으로 설정
(이 경우 추가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대기법 시행규칙 제15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에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의 추가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1) 허가배출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추가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환경기준(정책기본법) 중 연간 평균치
(해당 오염물질의 연간 평균치가 없는 경우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장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100분의 3이하인 경우

1 단계

추가오염도(장기) \leq 3% 환경기준(장기)

[해당 오염물질(장기)이 없는 경우 환경의 질 목표 수준]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2) 허가기준(안)의 농도 수준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을 때 다음의 기준 모두 만족하는 경우

가) 추가 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환경기준(정책기본법) 중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 또는
해당 오염물질 없을 경우
(시행규칙 별표 7에 단기 환경의 질 목표 수준에서 환경의 질 목표 수준 장기를 뺀 값)
또는 총오염도의 24시간 평균치, 8시간 평균치 및 1시간 평균치가 단기 환경기준 이하

2 단계

추가오염도(단기) \leq 100% 환경기준(단기)

또는 (환경의 질 목표 수준 단기-장기)[해당 오염물질 없는 경우]

총오염도(단기) \leq 100% 환경기준(단기)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나) 총 오염도의 연간 평균치가 장기 환경기준 이하일 것

2 단계

총오염도(장기) \leq 100% 환경기준(장기)

3) 업종별 환경관리기법의 전반적인 기술수준 및 오염배출 농도의 비정상적인 일시적 급증현상 등을 고려하여 허가기준 설정 값을 충족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 고시 농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방법

다. 관할 지역의 대기질 수준의 유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 지역환경 기준 또는 환경의 질 목표를 충족할 경우 그 기준 안을 허가 배출기준으로 설정

(기준 또는 목표를 충족할 수 없으면 **별도 고시 농도 기준으로 설정**)

라. (공공폐수처리장/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경우 : 처리가능 오염물질,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 재이용/위탁처리, 해양방류, 추가오염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에 따라 추가 오염도를 산정하지 않는 **대기오염물질은 별표 15의 최대배출기준을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허가배출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의견이 제시된 경우 해당 의견을 반영한 허가배출 기준을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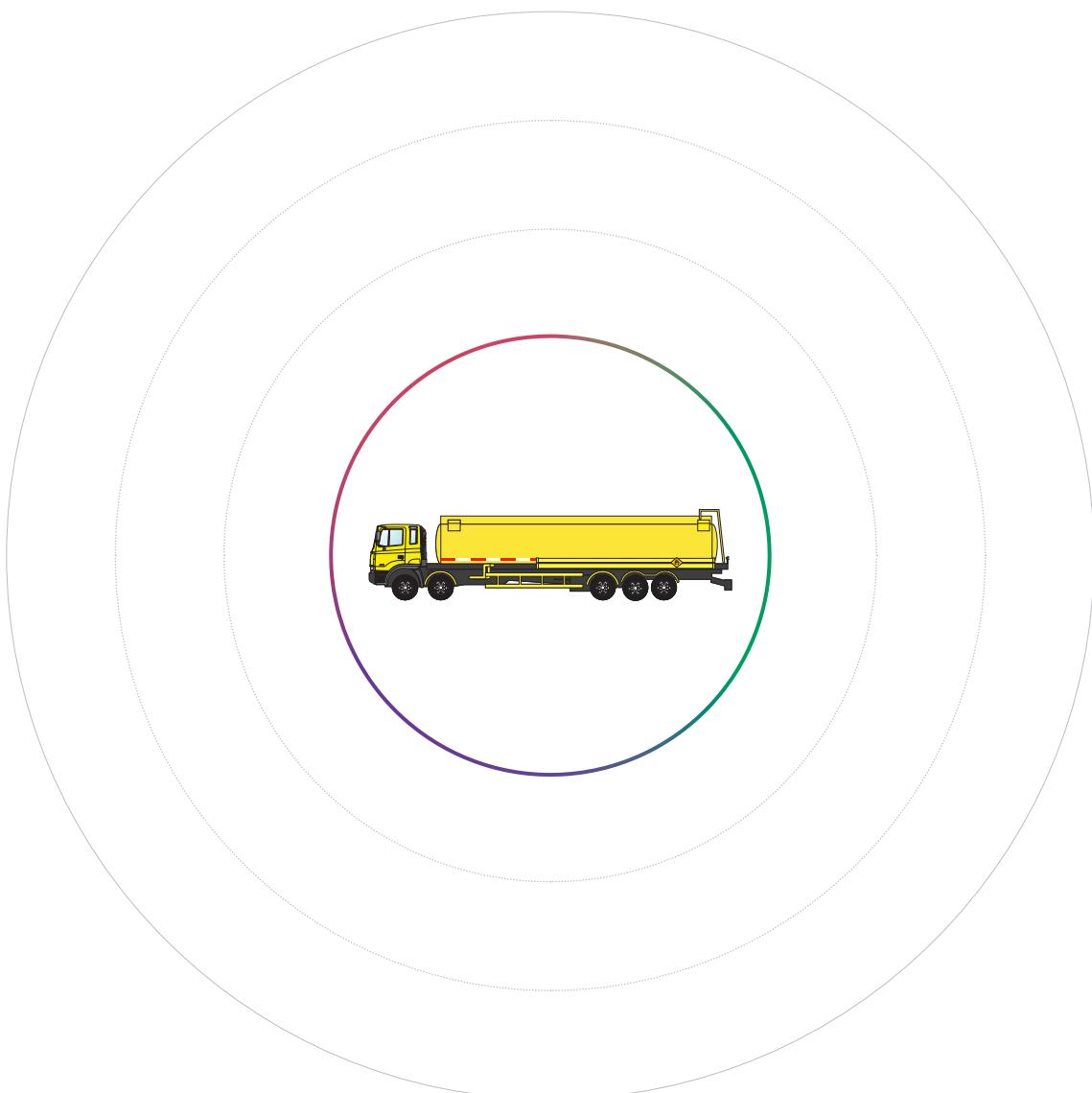


감사합니다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송종
H.P : 010-9966-6740



폐기물관리법 개정



삼양엔지니어링 송종 대표

[2022년 통합환경안전관리자 교육]

폐기물관리법

2022. 10. . – 2022. 11. .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송종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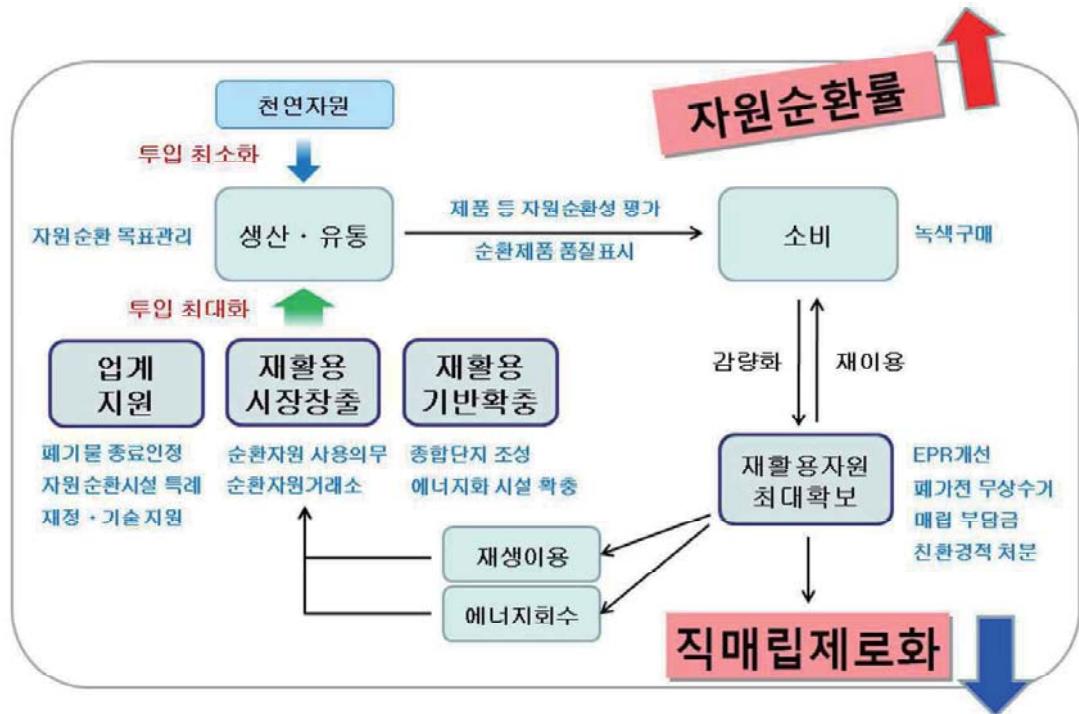
II.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정책 패러다임 전환

구 분	그간의 정책	새로운 정책
정책여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심화	기후변화, 원자재, 에너지 고갈
목 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원순환사회 구축
추진전략	폐기물 감량, 재활용 및 안전 처리	효율적 생산, 유통, 소비, 물질 재활용, 에너지 회수 및 처리 선진화
추진과제	쓰레기 종량제, EPR 및 처리 시설 설치 등	자원순환성 평가, 폐금속자원 재활용, 에너지시설 확충 및 수집, 처리 광역화 등
핵심개념	"폐기물"	"자원순환"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폐기물 이란 ?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SY 삼양엔지니어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생활폐기물 이란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사업장폐기물 이란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 공공 하수, 폐수, 분뇨,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 지정폐기물(폐산, 폐알카리 등)
- 일일 평균 300Kg 이상의 배출 사업장
-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배출 사업장(**착공부터 완공까지 발생량**).



II. 폐기물관리법

지정폐기물 이란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의료폐기물 이란 ?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II.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이란 ?

가. 폐기물을 재사용 ·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 재생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나.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II. 폐기물관리법

폐기물 감량화 시설의 종류

1. 공정 개선시설

물질정제, 물질대체에 의한 원료 변경과 해당 제조공정 일부 또는
전체 공정의 변경, 설비 변경 등의 방법으로 해당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총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시설

2. 폐기물 재이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해당 공정의 원료 또는 부원료로
재사용하거나 다른 공정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같은
사업장에 설치하는 시설

3. 폐기물 재활용시설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제조시설과 연속선상에 설치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재활용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4. 그 밖의 폐기물 감량화시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과 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II.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1. 원형 그대로 또는 단순 수리 · 수선,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유형(R-1, R-2)
2.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재생 이용하는 유형(R-3, R-4)
3. 농업이나 토질개선을 위하여 재활용하는 유형(R-5, R-6)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 복토재 · 도로기층재 · 채움재 등
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5. 에너지를 직접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6. 제품 제조 등을 위한 중간가공폐기물을 만드는 유형(R-10)
7. 재활용 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R-11)



II. 폐기물관리법

재활용 환경성 평가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폐기물 : 12만톤, 폐기물 + 토양 : 12만톤, 재활용 부지면적 : 3만제곱미터)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 기층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제조는 제외



II.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1. 배출시설 설치. 운영 하는자 : 일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2. 공공 폐수, 하수, 분뇨, 가축분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하는 :

일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3. 폐기물을 일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자

4.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5톤이상 배출자(착공부터 완공까지 발생량)

5.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 대표자



II.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기한

1. 사업장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일련의 공사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3.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자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



II. 폐기물관리법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1개월 이내**
(일련의 공사 : 총배출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 : 처리전)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추가 배출되는 경우(일련의 공사는 제외) : **1개월 이내**
사업장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1개월 이내**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1개월 이내**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처리장소 변경은 제외): **1개월 이내**
- 공동처리 운영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1개월 이내**
-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 **10일이내**
-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 : **10일 이내**
-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 : **1개월 이내**



II.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작성 대상 폐기물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
- 폐산, 폐알카리, 금속성 분진 또는 폐유독물 등으로 화재, 폭발, 유독성가스 발생 우려 물질 등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II. 폐기물관리법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작성 내용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사업장폐기물의 연간 발생량
2. 사업장폐기물의 포장 방식
3. 유해특성
4. 사업장폐기물의 성분 정보



II.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고

(규모 이상은 설치승인)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 · 열분해시설 · 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증발 · 농축 · 정제 또는 유수분리
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압축 · 압출 · 성형 · 주조 · 파쇄 ·
분쇄 · 탈피 · 절단 · 용융 · 용해 · 연료화 · 소성(시멘트 소성로는 제외한다)
또는 탄화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중 탈수 · 건조시설, 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6. 생물학적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 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7. 소각열회수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II.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신고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30일 이내**
2. 처분 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 **변경전**
3.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소재지의 변경 : **변경전**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처분 또는 재활용 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 **변경전**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 **변경전**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 **변경전**
 - 가. 폐기물 처분시설의 구조변경으로 **별표 9 제1호나목2)가)**의 (1) · (2), 나)
의 (1) · (2), 다)의 (2) · (3), 라)의 (1) · (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나. 폐기물 재활용시설의 구조 변경으로 **별표 9 제3호마목13) · 14)** 또는
사목11) · 12)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 다. 차수시설·침출수 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 라. **별표 9 제2호 나목2)바)**에 따른 가스 처리시설 또는 가스 활용시설이
설치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 마. **별표 9 제2호나목2)차)**에 따라 침출수매립시설환원정화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바.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폐기물 수집·운반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생활 폐기물	<p>(원칙) 밀폐형 차량</p> <p>(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 폐지·고철·폐포장재 수집·운반• 흘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p>(예외2)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폐지·고철·폐포장재를 2톤 미만 차량으로 수집·운반
음식물류 폐기물	<p>(원칙) 탱크로리</p> <p>(예외)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기준

사업장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고상), 탱크로리(액상)
	(예외1)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폐가전·가구 등을 원형 그대로 수집·운반폐지·고철 등 침출수, 부패, 흘날림의 우려가 없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흘날림, 침출수 발생 우려가 없는 덩어리 형태 폐기물을 기계식 장치 부착 차량으로 수집·운반
	(예외2, 고상) 합성수지 등 포장 덮개 설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밀폐된 용기, 밀폐된 상태로 포장하여 수집·운반
지정 폐기물	(원칙) 밀폐형 차량(고상), 탱크로리(액상) (예외)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밀폐된 전용의 수거용기에 담아 수집·운반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폐기물 수집. 운반 기준

구분	밀폐형 덮개 기준
재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방수기능을 갖추고, 한국산업표준 KS M ISO527 인장시험(시험편의 좁은 평행면 부분의 폭은 10mm로 함)을 적용하여 측정한 인장 하중이 500N 이상인 재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형태
구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금속 이외 재질의 덮개를 설치할 경우 덮개를 지지할 수 있는 금속 재질의 덮개 프레임(적재함 옆면을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중 덮개의 펄럭임 방지와 덮개 개폐 시의 안전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철재 보강재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음(덮개 또는 덮개 프레임은 적재함 보조틀로 사용할 수 없음)덮개는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완전히 덮고 적재함에 고정하여야 하며, 폐기물 상·하차를 위해 덮개를 개폐하도록 설치할 수 있음수집·운반 시 폐기물이 비산·누출되지 않도록 적재함의 최고점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도록 함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함을 변경하거나 덮개를 설치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 제34조 및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자기인증 또는 퓨닝승인 대상에 해당될 경우 관련 인증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함
별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최대 적재량 5톤 미만의 재활용품 수집·운반차량은 덤플 기능이 가능하며, 적재함의 크기는 다음의 비중을 적용 [재활용품 0.2, 대형폐기물 0.24, 재활용품(압축형 차량) 0.3]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밀폐형 차량 적용 사례

- ❖ 압축·압착 진개차량, 암롤차량, 탱크로리, 윙바디 등 적재함을 금속으로
밀폐한 차량



- ❖ 적재함과 동일한 금속 재질의 덮개를 장착한 경우(천개형, 슬라이드형 등 포함)
도 밀폐형 차량 인정

SY ³¹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밀폐형 덮개 차량 적용 사례

- ❖ 폐기물의 유출 또는 악취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방수기능과
인장하중 500N 이상의 재질로 적재함의 상부 전체를 덮어 밀폐한 차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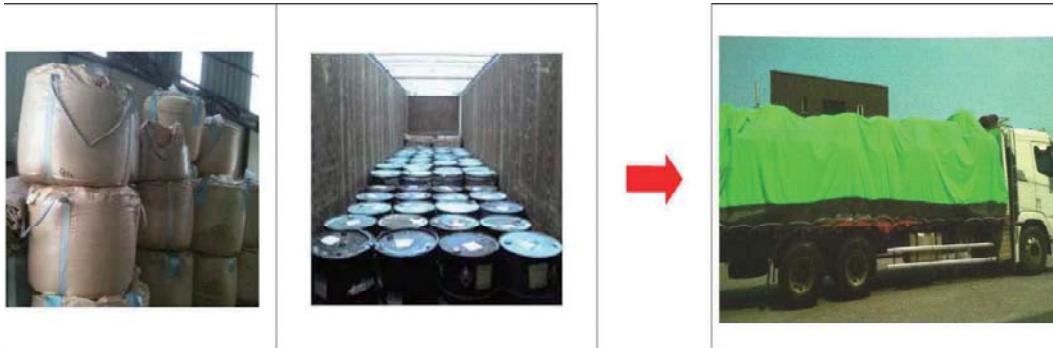


SY ³²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포장덮개 차량 적용 사례

- ❖ 밀폐된 용기에 담거나 밀폐된 상태로 포장한 경우에는 합성수지 등으로 포장덮개를 덮고 고정



- ❖ 밀폐된 상태로 포장한 경우란 1차 포장 용기가 밀폐되어 있고(예 : 용기 뚜껑 장착, 톤백마대 윗부분 밀폐 등) 용기가 흔들리거나 넘어졌을 때 내부의 폐기물이 낙하되거나 유출되지 않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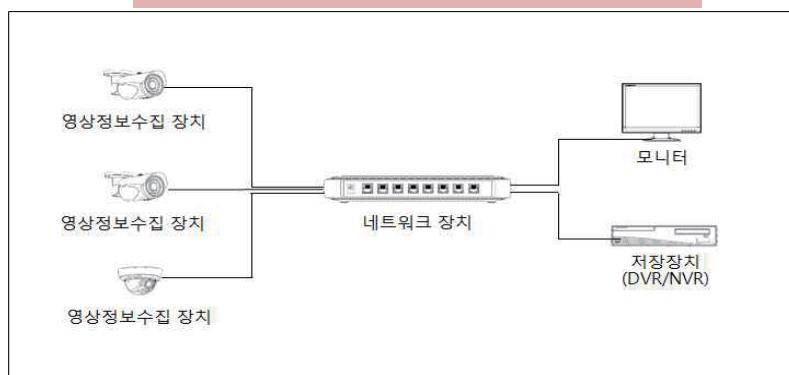
33
SY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보관. 매립 중 폐기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보관 · 매립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관리 및 영상정보의 수집 · 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할 것 (폐기물 수집 · 운반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60일간 보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구성도(제4조 관련)



34
SY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보관. 매립 중 폐기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별표 2]

카메라의 설치 대상위치 및 수량 등(제5조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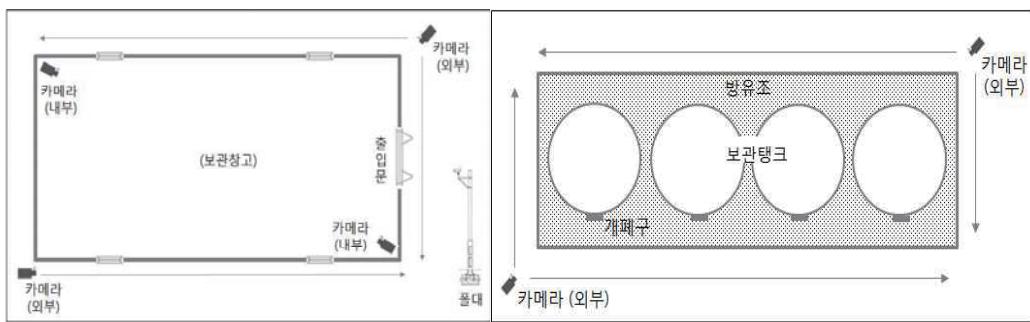
대상시설	설치 위치(방법)	수량
- 보관창고	- 내부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촬영 각도를 고려하여 건물 모서리 천정부에 대각선 방향으로 1대 이상	3대 이상
	- 외부 : 보관창고 출입구 및 외관 전체를 촬영 할 수 있는 위치에 2대 이상	
- 보관탱크	- 개폐구를 포함하여 보관탱크 외관 전체를 촬영 할 수 있는 위치	2대 이상
- 매립시설	-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메라 촬영 각도와 거리를 감안하여 매립시설 전체와 매립작업 현장을 촬영 할 수 있는 위치	3대 이상

SY 35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보관. 매립 중 폐기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대상시설별 카메라 설치지점]



[보관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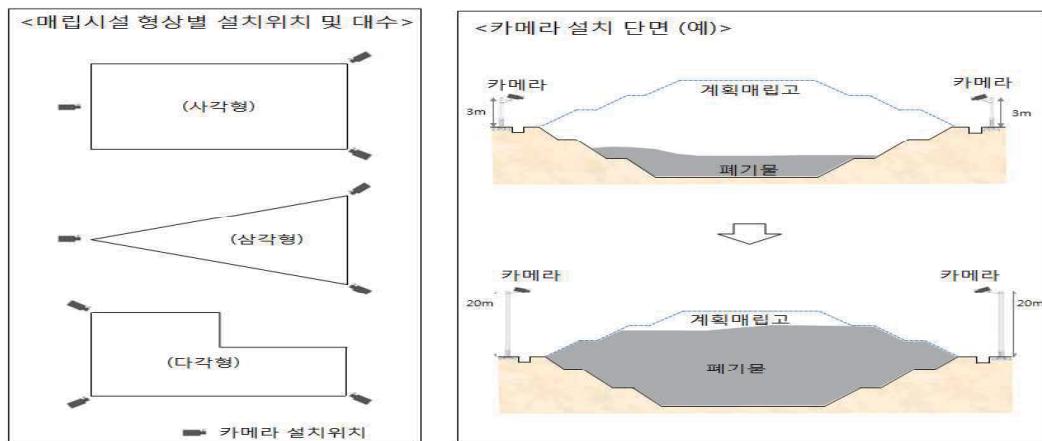
[보관탱크]

SY 36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보관. 매립 중 폐기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대상시설별 카메라 설치지점]



[매립시설]

SY 27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II. 폐기물관리법 관련사항

보관. 매립 중 폐기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설치 기한]

대상시설	설치시기	비고
2021. 7. 6 당시 허가 받은 보관량 300톤 초과 폐기물처리업자	2022년 7월 5일까지	1년 이내
2021. 7. 6 당시 허가 받은 보관량 300톤 이하 폐기물처리업자	2023년 7월 5일까지	2년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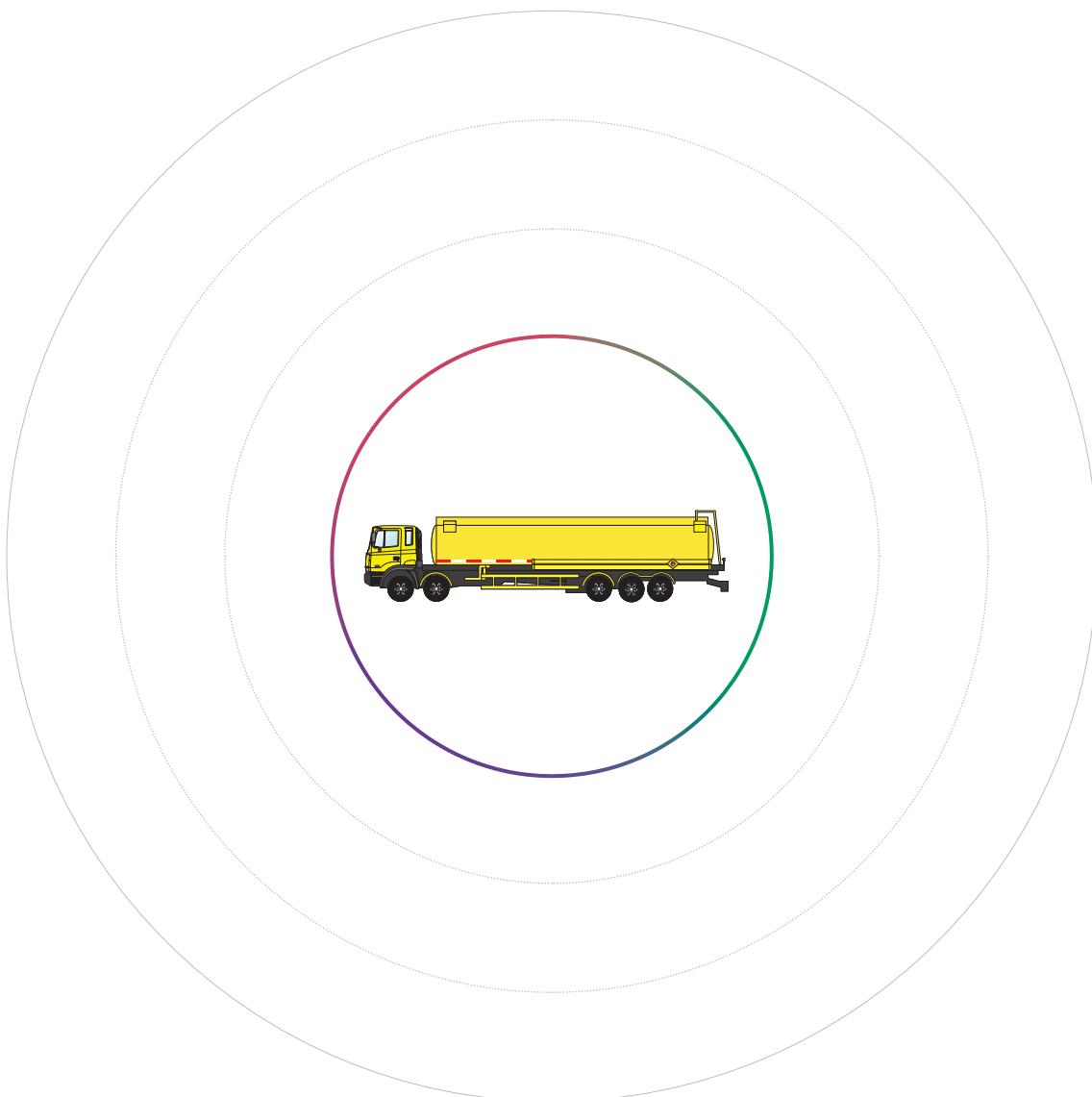
SY 28
삼양엔지ニア링
SAM YANG ENGINEERING

감사합니다

삼양엔지니어링
대표 송종
H.P : 010-9966-6740



사업장 폐기물관리요령 (사업장 지도점검 방향)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경호 주무관

일반사업장이 알아야 할

폐기물 관리 요령

광산구 청소행정과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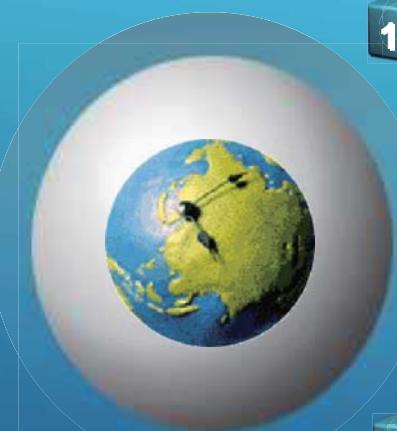
1 폐기물의 분류 체계

2 사업장 폐기물 적정 관리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4 올바로시스템 입력

5 참고사항



폐기물의 분류 체계

-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의 분류
-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의 관리 체계

폐기물의 분류 체계

-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 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의 분류
-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 폐기물의 관리 체계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법률

적용 범위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폐기물의 범주에 드는 물질의 처리에 관하여 이 법률을 적용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폐기물관리법상 정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관련 판례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02.6.1. 선고 2001도70판결)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폐기물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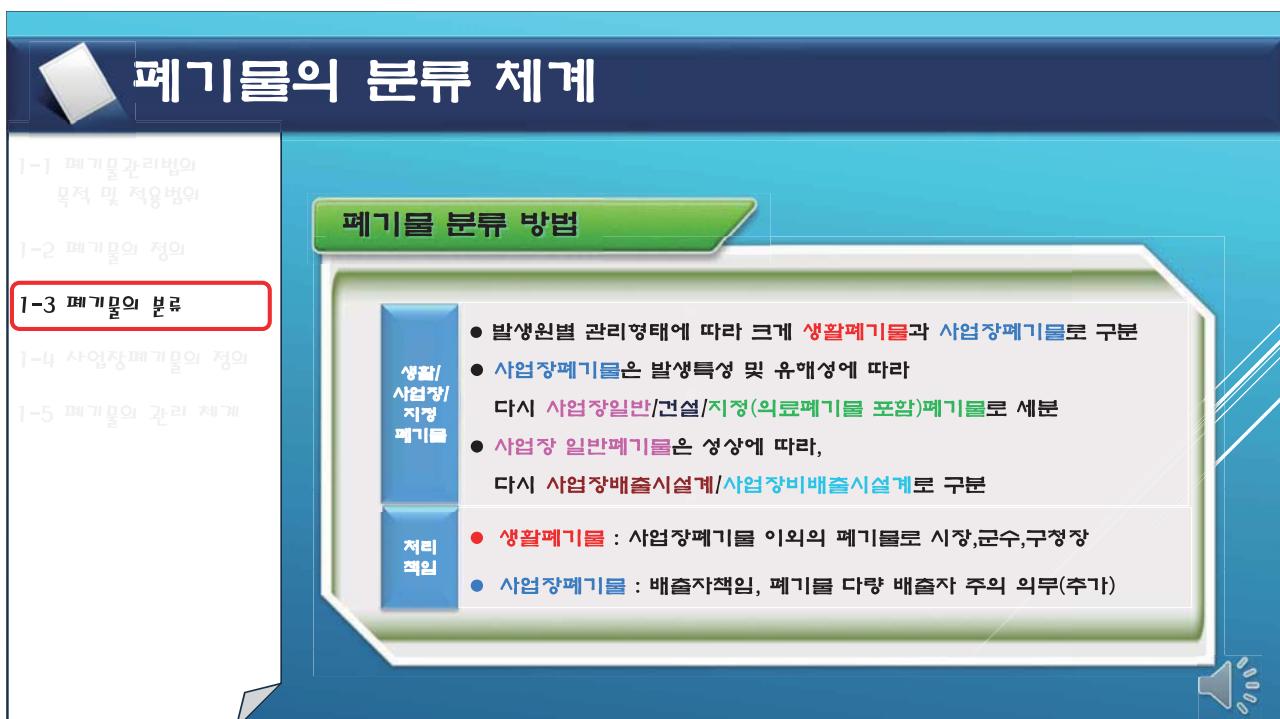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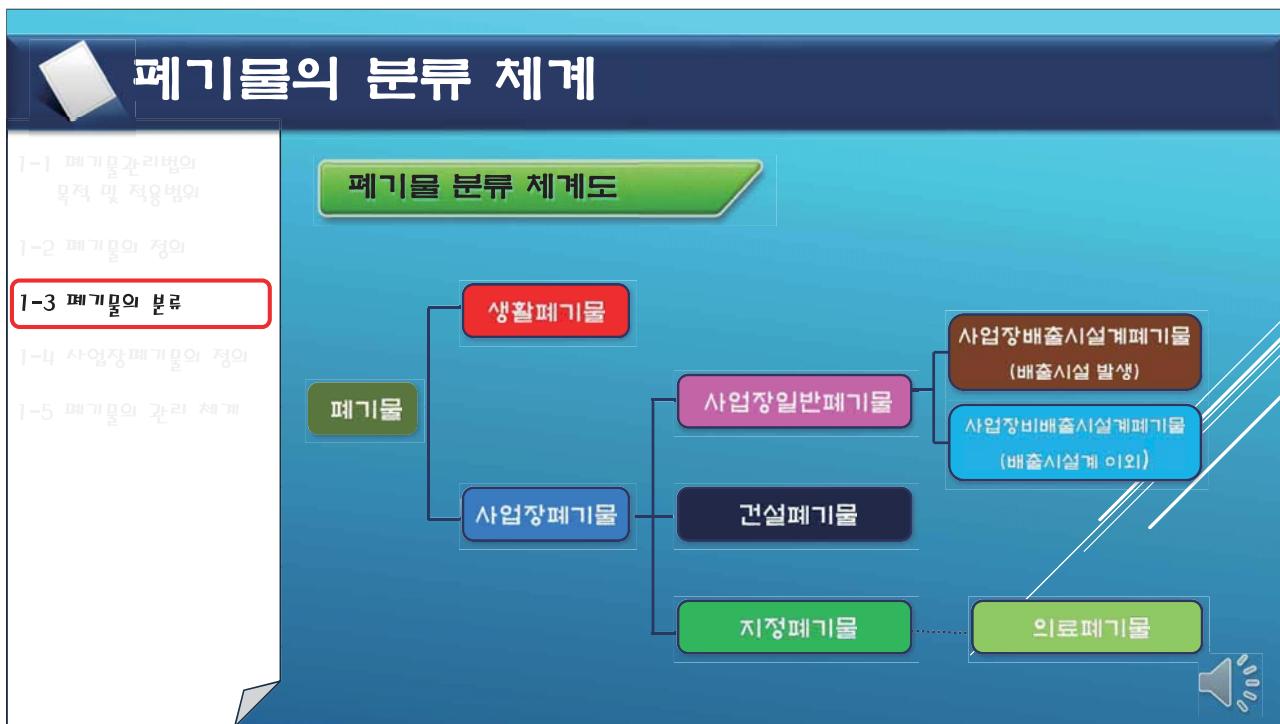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폐기물관리법상 정의(해설)

✓ 배출자에게 사용가치가 없는 물질이 제3자에게 유용하여 그에게 투상 또는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상 적정처리가 필요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함

✓ 사업장 자사 생산제품 중 규격미달 불량제품 또는 반출제품을 다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볼 수 없으나, 이를 다른 회사에서 재가공하여 제품 또는 (부)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해당됨

✓ 외부로 반출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로 보는데 별도의 가공처리 없이 원료로 투입하거나 공장등록증 및 사업장등록증에 제품으로서 등재한 경우에는 폐기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 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별파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 분류

4. 흐름이어 1) 흐름은 종에 보통재·폐초재·도료기초재·재활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 (R-8)
가. R-7-1: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용시멘트·설정재·보조기초재·폐초재·도료기초재·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유형
나. R-7-2: 풍수수면과 배관연관을 받은 치료의 설정재 또는 평화설정재를 사용하는 유형
다. R-7-3: 폐기물재처리설비 노트로 또는 비단과 인접한 폐기물재처리설비의 보조재, 자
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라. R-7-4: 천장의 천장재역과 내·하부보복재·벽지재와 천장재로 사용하는 유형
마. R-7-5: 천장재와 속재재로, 지붕재설비로 주면으로 방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바. R-7-6: 경지지의 천장재로 사용하는 유형

5. 에너지화·적립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R-8, R-9)

가. R-8: 에너지화·적립 회수하는 유형
1) R-8-1: 시멘트성분의 보조재로 사용하는 유형
2) R-8-2: 소각설비화수설 등을 통해 제작되는 1등급에 따른 에너지 회수기준에 적
합하여 에너지화 회수하는 유형
나. R-9: 에너지화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유형
1) R-9-1: '시설의 설계와 재활용조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고형연
료제출의 유통기준에 적합하여 고형연료제출을 만드는 유형
2) R-9-2: 경재·유화·동화·불화·화학적 처리방법으로 재생연료이나 재생연료로
동유를 만드거나 유통기준으로 사용하는 유형
3) R-9-3: 일본화·단화 등 열역 처리방법으로 액체·기체·기화상의 연료로 만드는
유형
4) R-9-4: 형기·청소화·분해 등 생활용화학 처리방법으로 기체·액체상의 연료로 만드
는 유형
5) R-9-5: 화학발전소, 열병합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는 유형

6. 재활용 폐기물을 위한 종간기준화기기를 만드는 유형(R-10)

가. R-10-1: R-8부터 R-9까지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재활용하기 위한 종간기준화기기를
만드는 유형

별파의3 폐기물의 종류별 재활용 가능 유형

분류번호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사전· 제작·판매· 판매·여부
		R-8·R-10·10·	
51-05-02	시멘트제고용첨봉간·	R-8-1, R-9-2, R-10-1, R-10-2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5-03	발전시설분진·	R-8-2, R-7-1, R-10-1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5-04	폐설리가(규소질) 제조과 정기서 발행한 분간을 말한 다)·	R-3-4,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R-4-2, R-7-3,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5-99	그 밖의 분진·	R-3-1, R-8-2, R-3-3, R-3-4,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R-4-2, R-7-1, R-7-2, R-7-3, R-10-1, R-9-1,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	폐우물사 및 폐사·		
		R-1-1, R-4-1·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01	검포검결폐우물사·	R-3-5, R-4-2, R-7-1, R-7-2, R-7-3, R-7-5, R-7-6,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02	화학검결폐우물사·	R-1-1, R-4-1·	제작·판매· 판매·여부
		R-3-5, R-7-5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03	샌드볼라스터폐사·	R-1-1, R-3-1, R-3-2,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04	폐여과사·	R-3-5, R-4-2, R-10· R-1-2·	제작·판매· 판매·여부
		R-2-2, R-4-2,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51-06-99	그 밖의 폐사·	R-1-1, R-3-1, R-3-2, R-3-5,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R-4-2, R-10·	제작·판매· 판매·여부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 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사업장 폐기물 정의(법 제2조)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 궁공폐수처리시설, 궁공악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 지정 폐기물 배출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 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사업장 폐기물 내 지정 폐기물

정의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애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종류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 특정시설에서 발생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수지, 고무), 오니류(폐수, 궁정오니류) 유해물질 함유*
- 부식성폐기물 : 폐산(pH2.0이하), 폐알칼리성(pH12.5이상) 액체상태
- 유해물질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파물, 소각재, 폐죽재
- 폐페인트(용기 6mm이상 진존) 및 폐래커, 폐유(기름성분 5%이상 함유), PCBs 함유(액상 2mg/L이상), 폐유기용제
- 폐유독물(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
- 의료폐기물
- 폐식민(고영물질량기준 석면 1%이상 함유한 제품, 살비 등의 애체, 제거, 고영화된 석면제품의 연마, 절단, 가공 공정 발생)

* 유해물질 함유기준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시안 등 중금속)



폐기물의 분류 체계

1-1 폐기물 관리법의 목적 및 적용범위
 1-2 폐기물의 정의
 1-3 폐기물의 분류
 1-4 사업장 폐기물의 정의
 1-5 폐기물의 관리 체계

폐기물의 관리체계			
구 분	관리주체	비 고	
생활폐기물	시,군,구청장		
사업장일반폐기물	시,도지사	대부분 시,군,구 위임	
건설폐기물	시,도지사	대부분 시,군,구 위임	
지정 폐기물	공장(배출시설설치)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공장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대부분 시,군,구 위임
의료 폐기물	종합병원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합병원 외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위임	유역(지방)환경청 위임 대부분 시,군,구 위임

사업장 폐기물 적정관리

- 1 사업장 폐기물 처리체계
- 2 사업장 폐기물 신고 관련
- 3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 4 사업장 폐기물 보관(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리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폐기물 발생

- 사업장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 신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보 관

- 종류별, 성상별 구분 보관
- 보관기간 이내 보관(사업장일반 90일, 5톤 미만 제외/지정 45or60일, 1년간 배출하는 총량이 3톤 미만은 1년보관 가능)
-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 방지턱을 갖춘 창고 내 보관

처 리

-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저분업자등에 위탁처리
- 자가처리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기록 및 보고서 제출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리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상세)

1. 발생물질이 폐기물관리법 적용 대상 여부 확인
2. 폐기물의 종류를 확인
3. 지정폐기물을 여부 확인
4. 폐기물 분류 번호 부여
5.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또는 지정폐기물처리 계획 확인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전 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확인(규칙 제17조의 2)

확인대상 폐기물

- 오니류, 폐흘작제, 폐흘수제
-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
처리물, 폐죽매, 폐영광등 파쇄물
- 폐유
- 폐식면
- PCBs 함유 폐기물

확인 시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사용원료, 생산 또는 배출 공정 등의 변경으로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 처리 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위·수탁기준 및 절차(시행규칙 제16조의 8)

준수 대상

-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자
- 시행규칙 제1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대상자
- 시행령 제8조의4 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준수 사항

- 수탁자로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아 수탁처리 능력을 확인할 것
- 폐기물적정처리센터에서 공개하는 자료(행정처분, 판결사실 등)를 활용해 적법한
수탁자인지 확인 할 것
- 위탁계약은 폐기물의 종류 및 수량, 계약기간 및 위탁비용, 위탁하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및 취급시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체결 할 것
- 위탁계약서는 체결일로부터 3년 간 보관할 것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8조)

신고 대상

- (1호) 배출시설 설치운영자로서 폐기물을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시
- (2호) 폐기물처리시설 및 궁금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자가 일 평균 100kg 이상 배출
- (3호) 폐기물을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4호)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 (5호)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신고 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1~3호), 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4호),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5호)

신고 기관

- 자치구 : 지정 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자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변경신고 대상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일 평균 배출량이 100톤의 50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배출시설운영 사업장의 경우 일 평균 100kg 이상)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폐기물 배출자의 변경으로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처리방법 동일하며 처리장소만 변경한 경우는 제외)
- 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건설공사 및 일련작업)
- 배출량감소, 대표자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으나 배출자가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수리할 수 있음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변경신고 시기

-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
-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Speaker icon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개선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시행규칙 제18조의 2)

확인 대상

- 오니(월 평균 500kg 이상)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인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죽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이상)
- 폐암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락카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이상)
- 폐식면(월 평균 20kg이상)
- 폴리클로로네이트리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PCBs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 수온폐기물 등

확인 시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기관

- 자치구 :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외에서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자,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자
- 유역(지방)환경청 : 종합병원 의료폐기물을 배출자, 배출시설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으로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Speaker icon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확인

변경 확인 사유

-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을 월 평균 배출량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 확인 받지 아니한 지정폐기물이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양 이상)
-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변경되는 경우
-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 해당)

변경신고 시기

-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련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법 제17조)

- 발생 폐기물의 지정폐기물 분류 여부 사전 확인 및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 생산공정에서 감량화시설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으로 폐기물 발생량 최대한 억제
- 폐기물 처리 위탁 시 수탁자가 폐기물을 적정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 후 위탁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율바로시스템) 관련(법 제18조 제3항)

- 사업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인계인수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의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유타로시스템에 확정 또는 예약입력하여야 하며, 예약입력한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하여야 한다
- ◆ 불일치 인계정보나 기안조차 인계정보 발생 시 한국환경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인계정보 수정 또는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령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준수 대상

폐기물 다량 배출자 주의 의무(법 제17조)

-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자
- 시행령 제8조의4제1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자
- 지정폐기물이 아닌 아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 광재, 분진,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죽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 오니(월 평균 1톤 이상)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 처리물, 폐죽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이상)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식면(각각 월 평균 2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이상)
- PCBs(폴리클로로이데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유독물질,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수온폐기물 등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령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처리 과정 확인 사항

폐기물 처리 위탁 후 처리 과정 확인 의무

-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내용대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1개월마다 올바로시스템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확인할 것
- 이상의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주진센터를 통해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할 것
- 확인 결과 폐기물이 부적정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폐기물의 처리위탁을 중단할 것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령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법 제35조)

- 교육대상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자 신고 및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또는 고용 기술담당자
- 교육주기
 - (신규) 신고 또는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
 - (보수) 법 위반시
- 교육기관 : 환경보건협회 또는 한국폐기물협회

폐기물처리서류 기록과 보존(법 제36조)

- 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 내용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 서식의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법 제38조)

- 대상 : 사업장폐기물배출 신고자,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자
- 내용 : 매년 폐기물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령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사업장일반폐기물 보관

- 사업장배출시설에 폐기물을은 사업장비배출시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해당 폐기물을 위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엔트 등으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예외) 고渣, 폐지, 폐타이어 등,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 폐기물,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중간가공폐기물 : 120일)까지 보관
 - (예외)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리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주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지정폐기물 보관(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 폐유기용제는 위발되지 않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 지정폐기물에 의해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않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에 보관
- 폐기물 적재부케를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 (예외) 침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 [보관기간]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죽재, 폐곰작제, 폐흡수제, 폐농약, PCBs함유폐기물, 폐수처리(유기성)오니 : 45일, 그 밖의 지정폐기물 : 60일
- [보관표지] 폐기물종류, 보관가능용량, 취급시 주의사항 및 관리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 설치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1 사업장폐기물 처리체계
2-2 사업장폐기물 신고 관리
2-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주의사항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 제공 의무(법 제18조의 2)

작성 대상

-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
-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화재, 폭발, 유독가스 발생우려 폐기물
- 처리과정에서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수분과 접촉되지 않도록 정보 표시
- 예) 폐석고(폐인산석고), 폐석회, 금속성 분진, 분말 등

작성 주제

- 배출자 스스로 작성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 이내

내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일부 유해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해 유해특성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 한 후 그 사업장폐기물을 수탁자(처리업체 등)에게
인계하기 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수탁자는 유해성정보자료를 수집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장폐기물 적정관리

2-4 사업장폐기물 보관 (처리)방법

표 12.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서식(폐행산 사례)

■ 「萬物皆可憐 何嘗無之。」(卷之二 附錄卷之二)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 지도점검 내용
- 주요 위반 사례
- 지도점검 사례
-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항(1/2)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배출자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여부
-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 배출자 신고서상의 폐기물을 처리계획대로 처리하는지 여부 확인
-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실제 사업장의 현황 일치 여부

폐기물 처리 주체

-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수탁확인서 작성 여부(지정폐기물)
- 폐기물처리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위탁 처리 여부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능력 확인 후 위탁처리 하는지 여부
-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대상 폐기물과 위탁처리 폐기물의 적정여부
- 위탁처리업체와의 계약 관계서류 확인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항(2/2)

폐기물
보관관리
상태

- 폐기물의 종류 구분의 정확여부
- 다른 폐기물 등을 혼용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보관표지판 설치여부
- 수집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

폐기물
운반에
따른사항

- 운반에 따른 기준 준수 여부
(운반차량·중·발급 또는 적정 수집운반업체에 위탁여부, 운반방법의 적정성 등 확인)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매년 2월 말까지 실적보고 여부, 폐기물 관리대장 등 확인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법정교육 실시 여부
- 행정처분 및 행정 지시사항 이행 여부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2 주요 위반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보관기준 위반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
- 조치사항 : 벌칙

위반사항 처분기준



위반사항

- 보관기관 조작
- 폐기물 종류별, 성질·상태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적정 보관시설 및 보관용기(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보관표지판 미설치 및 표지판 내용을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지정·의료폐기물에 한함)
-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 표기사항 미표기
- 그 밖의 보관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정액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폐기물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미이행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조치사항 : 별칙 또는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일반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
- 지정폐기물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을 경우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및 변경확인 (상호변경 제외)을 받지 않은 경우

300만원

100만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폐기물 인계 인수에 관한 사항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및 제38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4조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처분기준

위 반 사 항

-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한 내에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 실정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및 거짓으로 작성 제출
 - ▶ 사업장일반폐기물
 - ▶ 건설폐기물
 - ▶ 지정폐기물

50만원

50만원

100만원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기타 사항

- 관련규정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 조치사항 :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처분기준

위반사항

- 폐기물을 배출자 법정고속을 받지 않거나 고속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1/6)

지도점검 사례(1/6)

지정폐기물을 바닥포장이 되어있고 방지턱을 설치하여 밀폐형 용기에 보관하고 있는 현장사진 (모범사례)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2/6)

폐인트류
지정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3/6)

폐기물을 야외보관
하면서 보관용기를
넘쳐흘려 보관기준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4/6)



폐유를 보관용기에
보관하였으나
보관용기에 폐유가
묻어있고 유출방지시설
없이 야외 보관하여
보관기준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5/6)



폐유를 야외보관하고
유출방지시설이 없어
주변으로 유출되어
주변환경이 오염된
보관기준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6/6)



폐산함유 폐죽전지를
야외보관 하고
유출방지시설이 없는
보관기준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지도점검 사례(6/6)



폐산함유 폐죽전지를
야외보관 하고
유출방지시설이 없어
외부로 유출된 위반 사례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위반
-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 벌금)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

-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300/600/1,000만원)
-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경우(100/200/300만원)
- 법 제1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변경확인 중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50/70/100만원)
-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50/70/100만원)
-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자가 그 해당자에게 교육을 받지 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 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50/70/100만원)
-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시(100/200/300만원)

Speaker icon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3조(벌칙)

-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 법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65조(벌칙)

-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Speaker icon

지도점검 내용 및 사례

3-1 지도점검 내용
3-2 주요 위반 사례
3-3 지도점검 사례
3-4 폐기물관리법 위반 벌칙

폐기물관리법 제66조(벌칙)

- 법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탁 또는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의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상호의 변경은 제외)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 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 법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온바로시스템 입력

- 작성대상
- 입력시기
- 등록 및 사용방법

올바로시스템 입력

4-1 작성대상

4-2 입력시기

4-3 드록 및 사용방법

작성 대상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8호에 의한 건설폐기물,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이 아닌 각호의 폐기물
 - ▶ 오너(1톤/월평균 이상 배출)
 - ▶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인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죽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각각 500Kg/월평균 이상 배출)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각호의 폐기물
 - ▶ 오너(500Kg/월평균 이상 배출)
 - ▶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인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죽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 130Kg 이상 배출)
 -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카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 (각각 100Kg/월평균 이상 또는 합계 200Kg/월평균 이상 배출)
 - ▶ PCB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폐기물(의료폐기물은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으로 입력)
- 사업장폐기물 공동폐기물 배출자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올바로시스템 입력

4-1 작성대상

4-2 입력시기

4-3 드록 및 사용방법

배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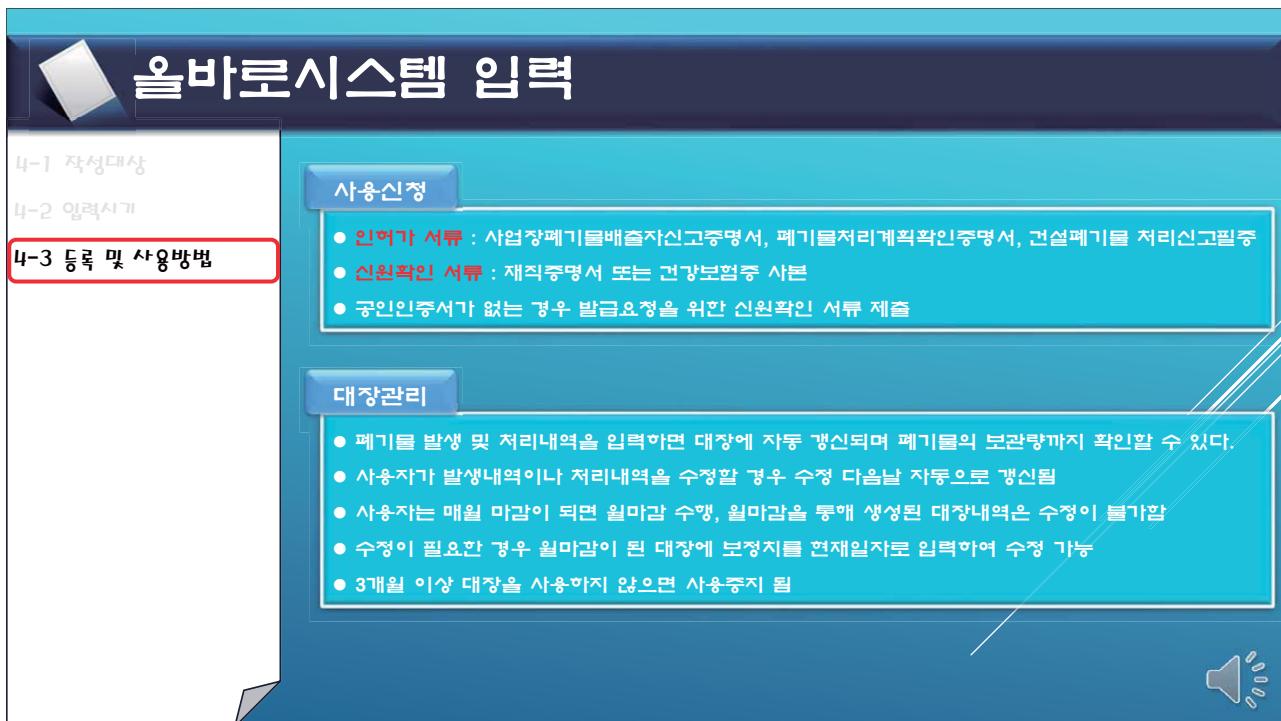
-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기 전에 예약 또는 확정 입력
- 예약입력의 경우 처리자가 폐기물을 인수한 후 2일 이내에 확정 입력
- 예약입력을 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을 배출 당일(24시)까지 입력

운반자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2일 이내
- 임시운반장소를 경유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처리자에게 인계한 후 2일 이내

처리자

-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한 날부터 2일 이내
- 의료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자는 RFID를 이용하여 올바로시스템에 입력



올바로시스템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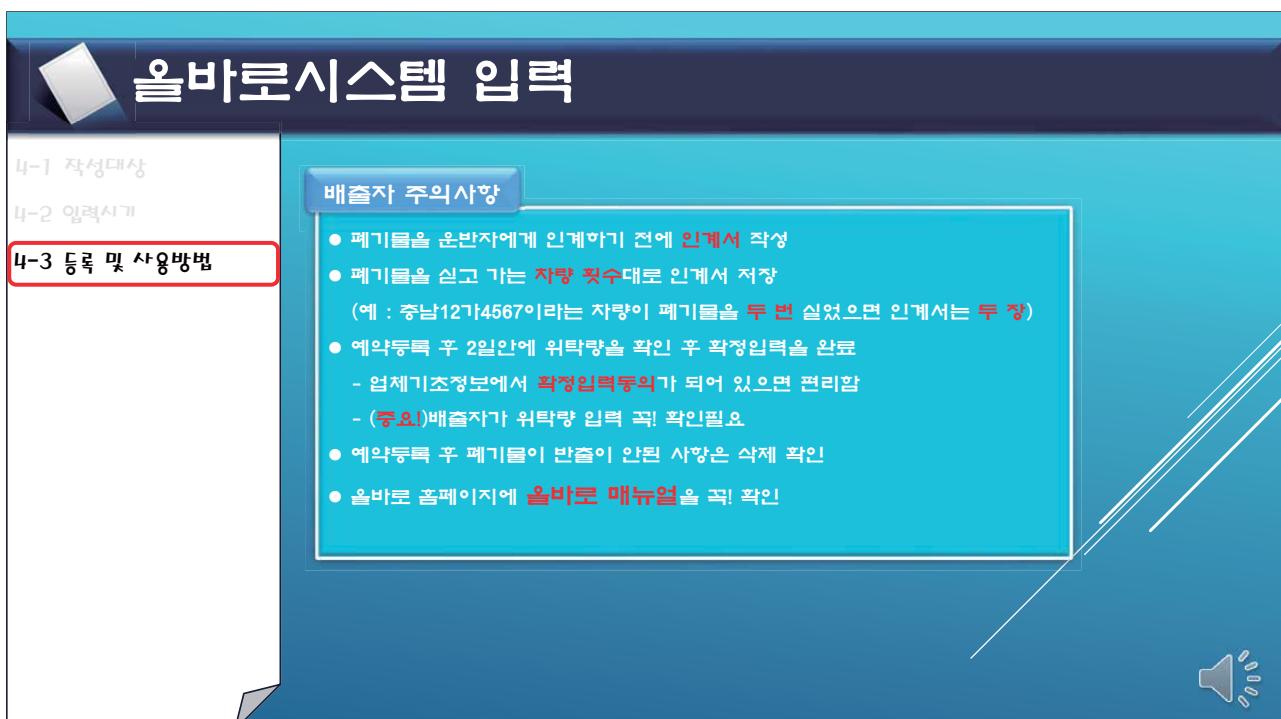
4-1 작성대상
4-2 입력시기
4-3 등록 및 사용방법

사용신청

- 인여가 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건설폐기물 처리신고필증
- 신원확인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 개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발급요청을 위한 신원확인 서류 제출

대장관리

- 폐기물을 발생 및 처리내역을 입력하면 대장에 자동 갱신되며 폐기물의 보관량까지 확인할 수 있다.
- 사용자가 발생내역이나 처리내역을 수정할 경우 수정 다음날 자동으로 갱신됨
- 사용자는 매월 마감이 되면 월마감 수행, 월마감을 통해 생성된 대장내역은 수정이 불가함
-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월마감이 된 대장에 보정지를 현재일자로 입력하여 수정 가능
- 3개월 이상 대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됨



올바로시스템 입력

4-1 작성대상
4-2 입력시기
4-3 등록 및 사용방법

배출자 주의사항

- 폐기물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인계서 작성
- 폐기물을 싣고 가는 차량 짐수대로 인계서 저장
(예 : 중남12가4567이라는 차량이 폐기물을 두 번 실었으면 인계서는 두 장)
- 예약등록 후 2일안에 위탁량을 확인 후 확정입력을 완료
 - 업체기조정보에서 확정입력동의가 되어 있으면 편리함
 - (중요!) 배출자가 위탁량 입력 꼭! 확인 필요
- 예약등록 후 폐기물이 반출이 안된 사항은 삭제 확인
- 올바로 홈페이지에 올바로 매뉴얼을 꼭! 확인

참고사항

1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2 신고서 작성 요령



참고사항

5-1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5-2 신고서 작성 요령

법 제13조(폐기물처리기준) 규정 강화

[기준] 법 제13조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자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변환경 오염 발생)
- (위반시) 과태료(주변환경 오염 미발생)
-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처리업체)

개정

[변경] 주변 환경오염행위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조치(고발)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주변환경 오염 발생)
-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처리업체)



참고사항

5-1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5-2 신고서 작성 요령

법 제17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사항 구체화)

기 존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 [중략] ~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 후 위탁하여야 한다.

변경

제18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려면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 [중략] ~ 관정부령이 정하는 위탁, 수탁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면 해당폐기물의 처리과정이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신설, 강화)
 ● 300만원 이하 과태료(배출업체) -> 삭제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및 영업정지 1개월(처리업체)

개정

참고사항

5-1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5-2 신고서 작성 요령

온바로시스템 입력정보 확대

기 존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내용을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한다.

변경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관정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라 한다.) ~ (생략)

●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미입력, 거짓입력)

개정

5-1 폐기물 관리법 개정내용

참고사항

5-2 신고서 작성 요령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종류에 따른 신고서식

사업장일반폐기물

1. 배출자 신고대상 1~3호(별지 제6호 서식) – 상시 배출사업장
-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배출자 신고 대상 4호(별지 제7호 서식) – 수시 배출사업장
-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3. 배출자 신고 대상 5호(별지 제8호 서식) – 공동운영기구
- 사업 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지정폐기물

1.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별지 제12호 서식)



참고사양

5-1 폐기물관리법 개정내용

5-2 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서 작성 방법(2/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별지 제6호 서식)

<div style="position: absolute; top: 0; left: 0; width: 100%; height: 100%; background-color: #f0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소행정과)

양경호
363YKH00@korea.kr
062)960-8481





설문조사서

【2022년도 환경교육사업 설문서】

전문환경교육 수료자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본 설문서는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통계자료 및 향후 센터사업의 개선에 참고하고자 작성된 것으로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문 1. '22년도에 귀하가 받은 전문교육 과정명은 무엇입니까?

1 2 3 4 5 6

『통합환경 - 폐기물관리 역량강화교육』

문 2. 귀하가 받은 위 전문교육 과정의 교육시간은 **총 몇 시간**이었나요?

총 5 시간

문 3. 귀하가 전문환경교육 과정을 **수강한** 가장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문 4. 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만족(5점)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 5. 강사의 강의수준은 만족스러웠습니까?

- ① 매우만족(5점)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문 6. 교육과정이 귀하의 지식 습득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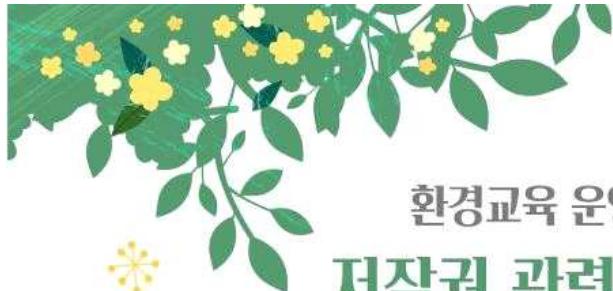
- ① 매우 도움됨(5점) ② 도움됨 ③ 보통 ④ 도움안됨 ⑤ 매우 도움안됨

문 7. 전문환경교육 수료 후 현재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문 8. 향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른 환경 교육과정을 수강하시겠습니까?

- ① 그렇다 ② 아니다 ③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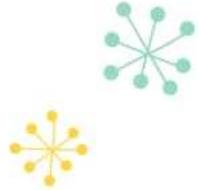
문 9. 향후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 운영에 바라는 사항?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교육팀
062-530-3992

환경교육 운영에 따른 저작권 관련 유의사항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운영됩니다.
환경교육에서 사용되는 PPT자료, 동영상 등 각종 자료는 강사(타인)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개별이용에 대한 강사의 사전 동의없이 **교육자료를 복제·배포·전송·공유·판매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다음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용되는 행위

저작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서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제한된 기간 동안 수업참여를 위한 강의자료를 학습목적
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금지되는 행위

- (1) 무단으로 복제(강의자료 내려받기 및 녹화) 또는 내려받은 강의자료를 수강생 본인 외 제3자에게 배포(출력물의 경우), 전송(파일업로드), 공유 또는 판매하는 행위
- (2) 수강생 외에는 강의자료를 이용·복제할 수 없으나, 강의자료가 게시된 홈페이지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알려주는 행위, 강의자료를 해킹하거나 임의로 강의를 촬영하여 유포 또는 공유하는 행위
- (3) PT강의자료, 동영상 등 각종 강의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특히 해외저작물을 포함한 강의자료의 경우, 관계 법령 위반 및 저작권 침해를 사유로 소송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저작권법

[시행 2021. 6. 9.] [법률 제17588호, 2020. 12. 8., 일부개정]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제3항 각 호의 학교 또는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는 기관(이하 “수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라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022년 통합환경-폐기물관리 역량강화교육

온라인자료집

발 행 2022년 10월 1일

발 행 처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제1산학협력공학관 301호
062-530-3992

발 행 인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 센터장
인 쇄 처

사전 승인 없이 자료집 내용의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함